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3419호

나. 발 의 자 : 채수지 의원

다. 발의일자 : 2026년 2월 9일

라.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II. 제안이유

-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이 충분한 보호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 진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폭력 대응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와 ‘경계선지능 학생’을 정의하고, 그 밖의 용어는 법에 따르도록 정비함(안 제2조)

- 장애학생 또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진술 조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3. 입법예고 : 2026. 2. 20. ~ 2. 24.(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6년 2월 9일 채수지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419호로 발의되어 2026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2. 주요 검토의견

1) 정의(안 제2조)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는 “심의위원회”와 “경계선지능 학생”을 정의하고,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동 조례는 제24조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개별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제24조와 제25조에서 정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 그러나 해당 심의위원회는 처음 정의하고 있는 제24조뿐만이 아닌 앞선 제4조의2에서도 동일한 용어를 규정하고 있어 법 전체의 가독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안 제2조에서 “심의위원회”의 용어를 별도 정의 규정에 통합하여 명확히 정의한 것은 법적 통일성과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정의 용이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며, 현행 법령상 이를 명확히 정의한 규정도 없음.
-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에서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¹⁾하고 있으며, 안 제2조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음.
- 더욱이 안 제2조의 ‘경계선지능 학생’ 정의 규정은 비록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지능 학생’을 보호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 작용으로서 별도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여 해석의 일관성과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장애학생 등의 보호 지원(안 제13조의2)에 대한 검토

- 안 제13조의2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거나 경계선지능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조사·상담 및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임에도 보호자나 특수교육 관계자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보호·지원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함.²⁾

1)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1. 성격장애나 정서·행동 문제,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교폭력 휘말린 자폐 중학생, 자기 방어권 보장됐나 (노컷뉴스, 2025.2.13.)

[표-1] 최근 3년간(2023~2025) 장애학생 학교폭력 현황

연도	장애학생 학교폭력 신고건수(건)	심의건수(건)
2023년	84	25
2024년	109	67
2025년 12월까지	169	69

- 이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는 피해 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더욱이 교육부가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도 ‘장애학생의 보호 및 지원’ 뿐 아니라 ‘장애가 다소 있는 학생의 경우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음³⁾.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할 때 장애인·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⁴⁾하기도 하였는바, 안 제13조의2에서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음.
- 그러나 안 제13조의2는 장애학생 뿐만이 아닌 경계선지능 학생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계선지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학생에 포함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4페이지(교육부 발행)

○ 장애학생의 보호 및 지원

-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장애가 다소 있는 학생의 경우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장애학생이 피·가해학생인 경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시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및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할 수 있다.

4) 인권위 "장애학생 학폭위에 장애 전문가 포함해야" (연합뉴스, 2026.1.22.)

-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할 때 장애인·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함.

- 다만 경계선지능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⁶⁾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통해 필요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뿐임.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의견을 제시함.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제2조제5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장애학생의 범위는 매우 분명하고 이를 넘어 확장 해석할 수 없으며, 그 범위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법은 하위 법령 등은 물론 교육감에게도 위임한 바가 없고,

나아가 만일 개정안과 같이 ‘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들을 전부 장애학생에 포함하여 해석할 경우, 조례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넘어 규정하여 법체계 정합성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행정관리담당관-2277, 2026.2.20.)

- 먼저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음. 따라서 국가사무가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음.

- 다만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되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고려해야 함.

- 현재 「교육기본법」 제4조제1항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조하고 있고,⁷⁾

같은 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4조⁹⁾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함께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2항과 제3항¹⁰⁾ 그리고 제11조의 2¹¹⁾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교육감 소관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은 교육·학예에

7)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8)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9) 「학교폭력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0) 「학교폭력예방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1)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관한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의 정의에 따라 인용하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장애학생의 정의나 범위에 경계선지능 학생을 포함하려는 취지가 아님.
 - 더욱이 교육청은 의견서에서 ‘학교나 본인 스스로 경계선 지능임을 알리고 학교폭력 사안조사나 심의위원회 등에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부연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청도 일선 현장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절감하고, 내부 지침을 통해 이러한 자치사무를 비공식적으로나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 사무가 전적으로 국가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불가하고, 동 개정조례안이 ‘경계선지능 학생’을 장애학생에 포함하여 해석함으로써 상위 법률에 위반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3인에게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 사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동 조례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자치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실시한 결과, 법률고문 3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표-2] 법률 자문 결과

구분	법률자문 요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 사무'는 <u>국가사무</u>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u>기관위임사무에 해당</u> ○ <u>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정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함</u>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사무 중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실체적 지원과 교육적 복지에 관한 영역은 법령에 의하여 <u>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고유한 자치사무에 해당</u> ○ 조례안은 상위법이 정의한 장애학생의 요건을 침해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닌 <u>경계선지능 학생이라는 정책 대상을 장애학생과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보호대상으로 정의하고</u> 있으며, <u>수익적 조례의 경우에는 상위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u>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전문가 의견 진술 조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u>은 처분적 사무가 아니라 <u>지원적·보완적 성격의 행정작용</u>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불가능한 <u>기관위임사무로 보기 어려움</u> ○ <u>경계선지능 학생</u>을 장애학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개정조례안과 같이 <u>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허용 가능</u>

○ 비록 3건의 법률 자문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다수의 자문의견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 사무’ 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 로 해석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계선지능 학생’ 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 및 자치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82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안내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⑥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
-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각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⑩ 교육감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⑫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⑬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⑭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제1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62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성격장애나 정서·행동 문제,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 2. 학업 중단 학생
 -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교육기본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63호, 2025. 1. 21., 일부개정]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